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1. 22 선고 2019가단98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호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,강인형

변론 종결 2019. 12. 4

판결 선고 2020. 1. 2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, 그가 2017. 8. 피고와 사이에 내비게이션(이하 '이 사건 물품'이라 한다)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. 8. 31.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 160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대금'이라 한다)을 지급하였는데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대금 160,00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,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, 피고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, 이 사건 대금은 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의 피고에 대한 미납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다 툰다.

2. 판단

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,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갑 제3호증, 을 제1내지 4, 7호증, 을 제5호증의 1내지 4, 을 제 8호증의 2, 을 제9호증의 1내지 3, 을 제11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. 4. 30. 소외 회사와 사이에 내비게이션,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되, 그 대금은 익월 25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, 소외 회사에게 2017. 6. 13. D 모델 1, 000대 180,000,000원 상당, 같은 달 28. E 모델 1, 000대 160,000,000원 상당을 각 공급한 후, 같은 달 30. 소외 회사에 340, 000, 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, 같은 해 8. 25. 그 중 180,000,000원을 지급받은 사실, ②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약정된 기일까지 나머지 대금 160,000,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 독촉을 하였고, 같은 달 31.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대금 160,000,000원을 지급받았으며,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 변제로 회계처리한 사실, ③ 한편 피고는 2017. 6. 1. 소외 회사에게 D 하) 0대 9,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고, 같은 날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9,000만 원을 대신 변제받은 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2017. 8. 31. 이 사건 대금을 입금한 이후 2018. 9. 경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때까지 별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원,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

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 급제품의 모델, 수량, 주문 및
납품방법, 단가, 대금지급 등 계약조건에 관한 약정도 없 는 점,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대금 전액을
선지급하고 물품을 그 이후에 공급받는 것 도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,
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 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
것이고,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금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신 변
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 었다고 보기도
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윤경아